

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용어를 재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
- 나.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이 되는 규제를 자체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명시(안 제4조, 안 제10조)
- 나. 용어 재정비(안 제10조의2)
- 다. 위탁 취소 범위 중 불명확한 내용 삭제(안 제14조)

3. 조례안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 - 2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 합의
- 라. 기 타 : 해당없음

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의 제목 “(국민생활관의 위탁운영)”을 “(국민생활관의 위탁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”로, “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”을 “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”를 “법 제8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국민생활관의 이용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조의2제1항제1호 중 “불가능할”을 “불가능하여 사용이 취소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정이 있을”을 “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전액과 사용료”를 “전액과 총사용

료”로, “취소 일”을 “취소일”로, “월 사용료”를 “총사용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4조1항의 규정”을 “제4조제1항”으로, “독립 채산제”를 “독립채산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위탁운영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제10조제1항 단서에

따라 시장이 이용료를 정하여 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이 이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의 사용료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민생활관의 위탁운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	제4조(국민생활관의 위탁 운영) ①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----- -----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재산의 관리) ①·② (생 략)	제7조(재산의 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10조(사용료의 징수) ①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	제10조(사용료의 징수) ① 법 제8조----- -----

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민생활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. <단서 신설>

② ~ ⑨ (생략)

제10조의2(사용료의 반환)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국민생활관 시설보수 등으로
인한 자체사정에 따라 시설사
용이 불가능할 때

2. 이용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
사정이 있을 때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
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.

----- . 다만, 법 제9조에
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
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
국민생활관의 이용료는 「공유
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
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
고시한다.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사용료의 반환) ① ---

 ---.

1. -----

---- 불가능하여 사용이 취소
된 --

2. -----
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
 한 --

② _____

1.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
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
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
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
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
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
는 금액을 공제한 후 월 사용
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
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.

2.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
일 이전 취소시 사용료의 10
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,
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시는 취
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
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
월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
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
다.

③ (생 략)

제11조(회계 및 운영) ① 제4조1
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
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
계는 독립 재산제를 원칙으로
한다.

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 결과
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

1. -----
----- 전액과
총사용료-----

----- 취소일

----- 총사용
료-----
-----.

2.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
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
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,
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
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
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
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
후 반환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회계 및 운영) ① 제4조제
1항-----

----- 독립재산제-----
-----.

② 제1항-----

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별도 적립
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탁운영의 철회) 시장은
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
때에는 위탁 운영을 철회할 수
있다.

1.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
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
하였을 때
2. 국민생활관의 사업목적에 위
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
3.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위반하
였을 때
4.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
을 위반하였을 때
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
하다고 인정할 때

-----.

제14조(위탁운영의 철회)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관계법령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2.4>

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2.4>

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

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>

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>

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2.4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8.12.26]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21조(수탁재산의 이용료 등)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·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>

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드는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

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>

③ 제2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21.>

[전문개정 2009.4.24.]

소관 실·과		체육진흥과
입 안 자	과 장	김 중 율
	담 당	임 기 동
	담 당 자	최 진 식 (480-5023)